5-2.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

■ 지방자치단체별 본청·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(단위: m², '21.12.31. 현재)

본청 청사			의회청사			단체장 집무실		
기준	보유	초과	기준	보유	초과	기준	보유	초과
면적	면적	면적	면적	면적	면적	면적	면적	면적
7,525	7,272	0	1,358	1,154	0	99	99	0

^{*}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,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